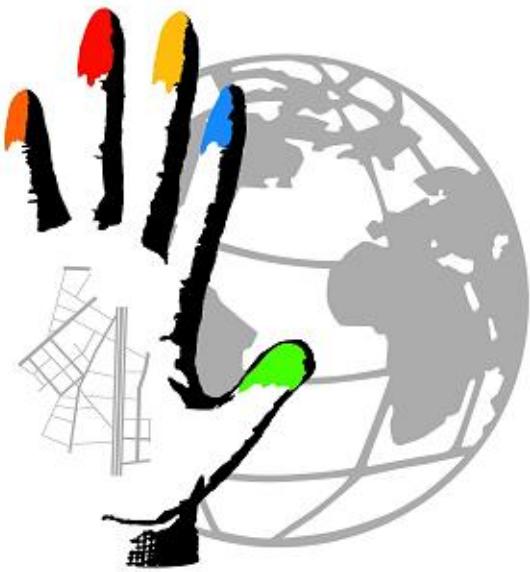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Villes Éducatrices
Asociación Internacional de
Ciudades Educadoras



국제교육도시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교육도시현장

교육도시헌장

1990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에 참석한 각 도시 대표들은 도시의 교육적 원동력을 골자로 하는 기본원칙을 1차 헌장에 명시했으며 이는 도시 거주자들의 교화(edification)를 요행에 부칠 수 없다는 확신의 발로였다. 교육도시헌장은 헌장의 개념을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제3차 국제총회(1994년 볼로냐)와 제8차 국제총회(2004년 제노아)에서 수정되었다.

본 헌장은 세계인권선언(1948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1990년), 그리고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에 입각한다.

서 문

오늘날의 도시는 크기에 상관없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무수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는 부정적으로 사용된 교육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시 안에는 도시를 동시에 복잡계, 교육적 관심의 대상, 그리고 교육에 해로운 요소를 퇴치할 능력이 있는 영구적인 복수의 다면적 교육 행위자로 만드는 교육과 훈련의 주요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교육도시는 국가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의 개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도시의 정체성은 교육도시가 속한 국가의 정체성과 상호의존적이다. 교육도시는 자급자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타도시 그리고 타국의 도시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의 목적은 경험을 학습, 교류, 공유하여 도시 거주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교육·발전·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적 기능(경제적·사회적·정치적 기능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기 기능을 수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도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연령을 불문하고 만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

이러한 교육도시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들 근거는 특히 효율적이고 공존에 기반을 둔 문화·교육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21세기에 직면한 커다란 도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이 고유성, 창의성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계발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개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느낌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며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완전한 평등의 조건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각 도시별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진정한 지식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도시들은 정규 교육기관들, (정규 교육체계와는 무관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비정규 중재,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비공식 중재와 함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교류한다. 협력정신의 가치 하에, 교육도시들은 연구 및 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의 형태로 공조한다.

인간은 한 단계의 변화들과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의 변화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사람들은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세계화 덕택에 활짝 열린 도전과 가능성에 적응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세상을 통해 복잡한 국제 상황에 개입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정치 권력의 중심에 의해 통제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율적 주체로 남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도시 생활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1959년 세계(아동인권)선언의 원칙을 확대 발전시키고 여기에 구속력을 제공한 198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완전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아동들도 자신의 성숙도에 맞는 결사와 참여의 권리を持つ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도시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한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세대간 공존에서 만족을 얻는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지닌 성인들이 보호해줄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21세기 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세대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더욱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글로벌 민주주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자국의 사회적·문화적 관습을 존중하는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질에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글로벌 시민의식이 구축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국가의 도시들은, 국내적으로, 민주시민의 실험과 통합을 위한 기반,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가진 여러 속성을 존중하고 윤리와 시민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통한 평화적 공존의 후원자, 그리고 폭넓은 대표·참여 페커니즘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도시에는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다양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도시가 직면하는 도전과제들 중 하나는 도시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의 기여도와 도시의 모든 거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권리를 고려하여 정체성과 다양성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흔히 상대방에 대한 무시나 상호 불신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교육 도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며 일방적인 단순 해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교육도시는 오히려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지식, 대화 및 참여의 과정을 제안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도시의 권리를 주장하는 바이다. 이 권리은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규교육 이수 단계와 성인기에는 도시의 자원과 교육력이 교육·노동·사회 제도의 일반적인 발전과 실질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교육도시에 거주할 권리은 만인평등, 사회정의, 지역균형 원칙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가 지난 모든 교육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교육도시원칙을 정치 프로젝트에 반영시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원 칙

1.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

-1-

도시의 모든 거주자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교육, 여가활동 그리고 개인적 성장의 수단 및 기회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은 만인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도시는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그룹별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 계획 및 시정(市政)에 있어 물리적인 장애물 등 평등권 실행을 가로막는 모든 유형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각급 정부기관들의 책임이다.

시민들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다양한 단체를 통해 이러한 과제에 헌신한다.

-2-

도시는 다양성과 이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세계평화에 관한 교육을 장려한다. 이것이야 말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는 교육이다. 교육도시는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평등한 조건 하에서의 대화를 증진한다. 또한 교육도시는 발생지에 상관없이 전위적 이니셔티브와 대중문화의 이니셔티브 모두를 이용한다. 교육도시는 오로지 상업적 기준에 기초한 문화 생산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3-

교육도시는 평화적 공존의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방법으로서 세대간 대화를 장려한다. 이를 프로젝트는 세대를 초월한 특성과 다양한 연령대의 개별적 스킬과 가치의 활용을 중시하는 시민 중심의 이니셔티브와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4-

시당국의 교육 관련 정책은 항상 사회정의, 민주주의적 공동체 정신, 삶의 질, 그리고 시민 개인의 교화(edification)의 원칙 하에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5-

시당국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갖는다. 권한의 범위를 막론하고 시당국은 모든 형태의 정규·비정규·비공식 교육, 그리고 도시의 실상을 드러내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정보의 출처와 경로를 포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통합된 교육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한편, 시 행정당국은 기타 중앙 또는 지역 행정기관들로부터 필요한 법령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6-

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거주자들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는 연구 및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공개해야 하며, 특정 제안과 일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이를 개인과 단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당국은 관할 지역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결정이 교육과 훈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도시 공약

-7-

도시는 자신만의 복잡한 정체성을 발견, 보존, 표출하는 방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는 고유한 개성을 갖게 되며 도시 거주자와 타 도시와의 유익한 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도시의 관습과 전통은 국제사회 생활방식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로써 도시는 자연과 사회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도시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에 대한 지식 · 학습 · 활용을 장려하고 이들 언어를 사회통합의 기본 요소로 사용해야 한다.

-8-

도시의 변화와 성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필요와 과거의 건물과 상징물의 보존 간에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어야 한다. 도시를 계획할 때는 도시 환경이 시민들의 자기 계발과 개인 및 사회적 염원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세대간 차별과 서로 배울 것이 많은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

도시의 물리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 접근성, 만남, 관계, 놀이, 여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교육도시는 도시계획, 시설, 서비스 개발 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이 자립 가능성을 최대한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지난 한계를 존중하며 이들에게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9-

교육도시는 중요성과 공동책임의 관점에서 시민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과 윤리적·공민적 가치에 입각한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도시는 여러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이 때 민간 차원의 주도적 참여와 다른 형태의 자발적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10-

시행정당국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시민들의 개인적·사회적·도덕적·문화적 함양에 적합한 공간, 시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1-

도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건강한 환경, 주택, 취업, 여가, 대중교통에 관한 권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도시는 건강교육을 증진하고 모든 거주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진사례에 동참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12-

도시의 구조물과 시스템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내재되어 나타나는 교육 프로젝트, 도시가 장려하는 가치, 도시가 제공하는 삶의 질, 도시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와 모든 종류의 캠페인과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숙고와 참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도시 거주자를 위한 봉사

-13-

시당국은 도시에서 제공되는 문화, 오락, 정보, 광고 및 기타 유형의 활동과 직접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도시 현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해 시당국은 비권위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시당국은 평가결과 공개 시 필요한 보호와 자율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당국은 또한 도시 간 교류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육 포럼 및 토론을 실시하여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십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

도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고 상호존중 정신 하에 도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흔히 부지불식간에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민간인 또는 공무원)과 일반 교육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또한 교육도시는 시당국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경찰력과 민간인 보호기관이 이러한 제안에 부합되어 행동하도록 한다.

-15-

도시는 거주자들에게 사회 내에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다는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는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직업 진로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 활동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우리는 교육계획과 노동시장의 필요 간에 존재해야 하는 긴밀한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요컨대 도시는 사회적 수요를 감안한 직업훈련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고용창출과 정규 및 비정규 평생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노조 및 사용자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16-

도시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차별과 무시의 작동기제와 그 다양한 형태를 잘 인식해야 하며 필요한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이든 망명자든 자신을 받아들인 도시를 자신의 도시로 만끽할 권리를 보유한 새 도시 거주자들에게 도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는 각계각층의 이웃과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중재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간에 대한 포괄적 관점과 개인의 권리와 만인의 권리에 의해 구성된 모델에 입각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는 조치는 다양한 관련 행정기관 간에 그리고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업무 간에 협력과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는 소위 제3 섹터 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유사 단체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조직된 시민 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18-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회적 · 도덕적 · 문화적 계발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와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공개하기 위해 도시는 참여와 시민 공동책임의 형태로서 단체 결성을 장려한다. 동시에 도시는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도 기여해야 한다.

-19-

시당국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가용한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선별, 이해 및 취급의 가치를 감안하여 교육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당국은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공동체를 파악하여,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지원센터를 제공한다.

동시에 도시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모든 연령대와 사회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도시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목표로서 모든 거주자들에게 민주 시민의 가치와 관습(존중, 관용, 참여, 책임, 그리고 공적인 것과 도시의 프로그램, 전통, 서비스에 대한 관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헌장은 아래에 서명한 도시들이 본 헌장에 표명된 일체의 가치와 원칙에 헌신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본 헌장은 수정 및 확대될 수 있다.